

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4. 4. 3 선고 2023가합324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식

피고 1. A영어조합법인

2.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훈, 김대석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정남

변론 종결 2024. 3. 6.

판결 선고 2024. 4. 3.

주 문

1. 피고 A영어조합법인은 원고에게 247,444,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4. 26.부터 2023. 7. 25.까지는 연 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 B와 피고 A영어조합법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22. 6. 14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3. 피고 B는 피고 A영어조합법인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22. 6. 21. 접수 제73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 A영어조합법인은 주식회사 C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신용보증신청을 하였고, 이에 원고는 ① 2017. 7. 20. 신용보증원금 99,000,000원, 신용보증기간 2017. 7. 20.부터 2018. 7. 19.까지, ② 2020. 11. 17. 신용보증원금 142,500,000원, 신용보증기간 2020. 11. 17.부터 2021. 11. 16.까지로 각 정하여 피고 A영어조합법인과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. 이후 위 각 신용보증약정 중 2017. 7. 20.자 신용보증약정은 그 보증기한이 2023. 7. 14.까지, 2020. 11. 17.자 신용보증약정은 그 보증기한이 2023. 11. 16.까지 각 연장되었다(이하 이와 같이 연장된 각 신용보증약정을 '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'이라 한다)

나.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,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A영어조합법인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, ② 기한 내에 대출금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증채무 중 미이행 채무액에 대한 대출금채무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소정 보증료율에 0.5%를 가산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, ③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모든 법적절차비용(대지급금)을 지급하여야 한다. 한편 2019. 4. 1.부터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연 8%이다.

다. 피고 A영어조합법인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C으로부터 2017. 7. 20. 110,000,000원, 2020. 11. 17. 150,000,000원을 각 대출받았으나, 2022. 12. 20.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(이하 '이 사건 신용보증사고'라 한다),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3. 4. 26. 주식회사 C에 2017. 7. 20.자 대출원리금 101,745,558원,

2020. 11. 17.자 대출원리금 146,619,73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. 한편 원고는 같은 날 피고 A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920,814원을 회수하여 이를 원금에 충당하였다.

라. 한편 피고 B는 2022. 6. 14. 피고 A영어조합법인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(이하 '이 사건 각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5,000,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, 2022. 6. 21.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22. 6. 21. 접수 제73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 A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A영어조합법인은 원고의 대위변제금 합계 248,365,290원(= 101,745,558원 + 146,619,732원)에서 이미 회수된 920,814원을 뺀 나머지 247,444,476원과 위 회수금에 관한 하루치 이자 상당의 확정손해금 201원(= 920,814원 × 0.08/365, 원 미만 버림)을 더한 247,444,677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3. 4. 26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. 7. 25.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당사자의 주장

1)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22. 12. 20.자로 피고 A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가지게 되었고, 실제로 2023. 4. 26.에는 주식회사 C에 합계 248,365,290원을 대위변제하였다. 그런데 피고 A영어조합법인은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 전인 2022. 6. 14.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후 2022. 6. 21. 그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였는바, 이는 원고 A영어조합법인의 책임자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 B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상회복으로 피고 A영어조합법인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여야 한다.

2) 피고 B의 주장 가) 피고 B는 2017년경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그 소유명의만을 피고 A영어조합법인 앞으로 명의신탁해둔 것이다. 따라서 피고 A영어조합법인이 2022. 6. 14.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것은 위 명의신탁약정 해지에 따른 기존 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
나) 설령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를 기존 채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, 피고 B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은 성립하지 않는다.

나. 판단

1)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) 관련 법리

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).

나) 판단

살피건대,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A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사전구상권(이하 '이 사건 사전구상권'이라 한다)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, 이후 약 6개월 후인 2022. 12. 20.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가까운 장래에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사전구상권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하였고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, 이 사건 사전구상권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2)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) 관련 법리

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

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(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),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 되고,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 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(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7다74874 판결 등 참조).

나) 판단

(1) 갑 제6호증,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 B가 2017. 2. 16. 피고 A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D이 지정한 E의 계좌로 30,000,000원을, 2017. 2. 20. D의 계좌로 170,000,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, 그로부터 약 4일 후인 2017. 2. 24.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던 F와 피고 A영어조합법인 사이에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, 2017. 3. 2.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7. 3. 2. 접수 제2031호로 피고 A영어조합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은 당초 피고 B가 부담하면서 그 명의만을 피고 A영어조합법인 앞으로 마쳐두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.

(2)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 B가 자신이 나서기보다 위 D이 나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입의사를 밝히면 적정한 가격에 매매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 A영어조합법인과 F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, 이는 소위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바, 당시 매도인이던 F가 피고들 사이의 위와 같은

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은 그 명의자인 피고 A영어조합법인이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 A영어조합법인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었다고 판단되며, 피고 B는 피고 A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.

(3) 따라서 피고 A영어조합법인이 2022. 6. 14.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 채권자인 피고 B에게 각 양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,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 A영어조합법인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사해행위에 따른 수익자인 피고 B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,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.

3) 피고 B의 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까지 피고 A영어조합법인의 채무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. 그런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및 전득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, 피고 B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4)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A영어조합법인과 피고 B 사이에 2022. 6. 14.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는 피고 A영어조합법인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22. 6. 21. 접수 제73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박현수

판사원도연

판사강민균

별지